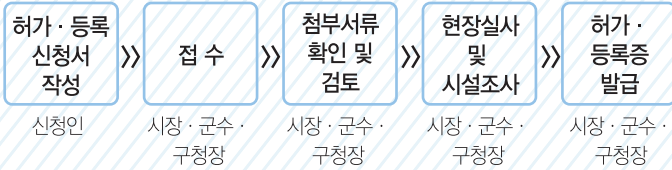


영업 등록 절차



※ 동물영업 : 동물장묘업/판매업/수입업·생산업/전시업/위탁관리업/미용업/운송업

벌칙 기준

1. 벌금 및 과태료



구분	금액	내용
벌금	500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자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·허가 •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
과태료	300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려동물 전달방법*을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* 직접전달,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
	100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물운송방법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한 자 • 영업자 지위 승계하고 미신고 •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영업자 • 미보고·자료 미제출, 거짓보고·거짓자료 제출,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 •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수행 거부·방해 또는 기피

2. 행정처분

–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,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등록·허가
-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
-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- 시설·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

| 영업자 공통기준 |

- 신청서류 : 모든 영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
 - * 동물생산·전시업의 경우는 폐업처리계획서 제출
- 교육 :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 대상
 - 매년 3시간 보수교육 의무화
- 영업 :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(허가)증, 요금표 게시,
 - 생산·판매·수입업자는 개체이력카드, 거래내역서 2년 이상 보관
 - * 수입업자 검역관련 서류 2년 이상 보관



2018.3.22부터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및

전시업

위탁관리업

동물미용업

운송업

등록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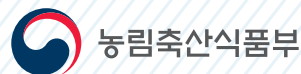


대상동물

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, 햄스터

문의처

해당 기초 지자체(시·군·구청)
동물보호 담당 부서 및
동물보호상담센터(1577-0954)



① 동물생산업(시행규칙 제36조)

‘18.3.22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.

* 기존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,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.

동물생산업은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됩니다.

* 소규모 생산 : ①체중 5kg미만(20마리 이하) ②체중 5kg~15kg미만(10마리 이하) ③체중 15kg이상(5마리 이하)

동물생산업 신고제, 허가제 비교

구분	신고제	허가제
인력기준	• 사육·관리인력 100마리당 1명 이상	• 번식이 가능한 12개월령 이상의 개·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
시설기준	• 뜬장 가능 (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)	• 뜬장 신규 설치 금지 • 기존시설 바닥면적 30%이상 평판 삽입 •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 조성 - 개 : 운동공간 설치 - 고양이 : 배변시설, 선반, 은신처 설치
준수사항	• 출산, 교배 및 운동 관련 규정 미비	• 만 1세미만 개·고양이 교배·출산 금지 • 출산사이 최소 8개월 이상 기간 부여 • 주1회 이상 운동 실시

* 무허가생산업체는 생산업허가신청 업체에 한해 허가추진 이행을 위한 계도 기간 부여

② 동물영업 관련 교육(법 제37조)

- 영업을 등록(장묘업 제외)·허가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교육 필수
-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의무화
-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 가능

③ 동물전시업(시행규칙 제36조)

동물 관련 카페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시설·인력

- 전시실, 휴게실 각각 구분 설치
- 소독장비, 이종문과 잠금장치 설치
- 사육·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이상



준수사항

- 전시하는 개·고양이는 생후 6개월령 이상, 동물등록 의무화
-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
- 체중·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등

* 전시동물, 생산이나 판매 목적 이용 불가



④ 동물위탁관리업(시행규칙 제36조)

동물 관련 호텔, 유치원 및 훈련소 등 위탁하여 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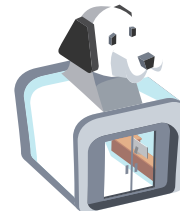
시설·인력

- 위탁관리실, 고객응대실 분리, 구획 또는 구분 설치
- 이종문과 잠금장치,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(위탁관리실에 설치)
- 사육·관리인력 20마리당 1명 이상



준수사항

- 체중·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등
- 위탁관리 계약서 제공
-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가능



⑤ 동물미용업(시행규칙 제36조)

동물 관련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동물미용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시설·인력

- 작업실·동물대기실·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 설치
- 소독장비, 작업대와 고정장치 설치
- 급·배수시설, 냉·온수설비 등 구비

* 시설을 갖춰 이동식 미용차량도 가능



준수사항

- 미용기구 소독
- 마취용 약품 사용 시 「수의사법」 등 관련규정에 따름

⑥ 동물운송업(시행규칙 제36조)

동물 관련 운송 영업(펫택시 등)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시설·인력

- 동물운송차량의 시설과 구조



준수사항

- 동물보호법 제9조 운송규정 준수
- 운송현황 작성·비치 등
- 소유자의 동승여부에 따라 운임 변동 불가

